

집합투자규약 변경대비표

집합투자규약 일부 변경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.

□ **효력발생일:** 2026년 8월 4일(화)

□ **대상 펀드**

- 1) AB 미국그로스증권투자신탁(주식-재간접형)
- 2) AB 미국그로스UH증권투자신탁(주식-재간접형)
- 3) AB 글로벌고수익증권투자신탁(채권-재간접형)
- 4) AB 셀렉트미국증권투자신탁(주식-재간접형)

□ **집합투자규약 변경대비표**

항목	정정사유	정정전	정정후
제25조(환매가격 및 환매방법)	환매주기 변경	①수익증권의 환매가격은 수익자가 판매 회사에 환매를 청구한 날부터 제4영업일 (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시 제5영업일)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으로 한다. ②제24조의 규정에 따라 환매청구를 받거나 환매에 응할 것을 요구받은 집합투자업자(집합투자재산을 보관·관리하는 신탁업자를 포함한다)는 수익자가 환매를 청구한 날부터 제8영업일(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시 제9영업일)에 수익자에게 환매대금을 지급한다.	①수익증권의 환매가격은 수익자가 판매회사에 환매를 청구한 날부터 제3영업일(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시 제4영업일)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으로 한다. ②제24조의 규정에 따라 환매청구를 받거나 환매에 응할 것을 요구받은 집합투자업자(집합투자재산을 보관·관리하는 신탁업자를 포함한다)는 수익자가 환매를 청구한 날부터 제5영업일(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시 제6영업일)에 수익자에게 환매대금을 지급한다.
제26조(환매연기)	환매주기 변경	⑦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. 1.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이 일정한 날의 제 6 영업일(17 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제 7 영업일) 전의	⑦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. 1.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이 일정한 날의 제4영업일(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제5영업일) 전의

		날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2. 법령 또는 법령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환매가 제한되는 경우	날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2. 법령 또는 법령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환매가 제한되는 경우
부칙	시행일 반영		<u>부 칙</u> <u>(시행일) 이 신탁계약은 2026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.</u>

□ 기 타: 상기 변경 관련 자세한 사항은 변경된 최종 서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